



제 432국회 (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경찰관에게 가정폭력범죄 등 피해자 보호가 요구되는  
범죄 대응교육의 정기적 실시 의무화〉

■ 전진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459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3 |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전진숙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5. 11. 21.
3. 회부연월일 : 2025. 11. 24.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정폭력·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는 일회적 폭력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이 현장에서 사건을 접수하거나 초동조치를 취할 때, 피해자 보호 중심의 판단 기준과 대응 절차에 대한 인식과 숙련도가 부족하여 피해자가 재차 폭력과 보복 범죄에 노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가정폭력범죄 및 스토킹범죄 등 피해자 보호가 요구되는 범죄에 대한 대응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경찰의 초동조치 역량을 제고하고, 피해자 인권 중심의 수사 및 보호체계를 제도적으로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찰관이 피해자의 위협 신호를 조기에 인식하고, 긴급입

시조치·분리조치·피해자 통보 등 법적 보호수단을 적시에 이행함으로써 재범과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제8조의4 신설).

###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이 가정폭력범죄, 스토킹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의 실시방법·절차·대상 및 평가에 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신설).

| 현행                | 개정안                                                                                                                                                                                                                                                                                                                       |
|-------------------|---------------------------------------------------------------------------------------------------------------------------------------------------------------------------------------------------------------------------------------------------------------------------------------------------------------------------|
| <u>&lt;신설&gt;</u> | <p>제8조의4(가정폭력범죄 등에 관한 대응교육 실시)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경찰관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p> <p>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p> <p>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p> <p>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 방법·절차·대상 및 평가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1. 4. 20. 제정, 2021. 10. 21. 시행) 제17조제3항은 경찰관서의 장(국가수사본부장,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 스톱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에게 스톱킹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sup>1)</sup>

경찰청은 이 조항을 근거로 2025년 스톱킹·교제폭력, 가정폭력·학대 대응, 여성·청소년 범죄 담당자 등 약 59,19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

#### 2025년 경찰청 가정폭력범죄, 스톱킹범죄 등 교육현황

| 교육과정명                            | 교육 대상<br>(정원 기준)                                                 | 총<br>교육인원 | 교육시간 | 주관              |
|----------------------------------|------------------------------------------------------------------|-----------|------|-----------------|
| 가정폭력·학대대응<br>실무과정                | 피해자보호팀 673명<br>(가정폭력·학대 담당)                                      | 671명      | 1일   | 시도청<br>교육센터(기초) |
| 가정폭력·학대<br>예방심화과정                | 피해자보호팀 673명<br>(가정폭력·학대 담당)                                      | 200명      | 5일   | 경찰인재<br>개발원(심화) |
| 가정폭력·학대예방<br>강사양성과정              | 가정폭력·학대 대응 과정<br>동료강사 활동 희망자                                     | 18명       | 5일   | 경찰인재<br>개발원     |
| 피해자보호팀 전문<br>위탁교육                | 피해자보호팀 673명<br>(가정폭력·학대 담당)                                      | 80명       | 1주   | 경찰청             |
| 사회적약자 보호<br>역량 강화 과정(국외<br>위탁교육) | 경정 이하 토론수업 및<br>연구 수행이 가능한<br>영어능력 우수자<br>(여청기능, 지역경찰<br>전문가 우대) | 10명       | 4주   | 경찰청             |

-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스톱킹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  
 이 없으면 스톱킹범죄 전담 검사가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서의 장(국가수사본부장,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스톱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스톱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  
 이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 및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의 스톱킹범죄 전담 검사 및 제2항의 스토킹범죄 전  
 담 사법경찰관에게 스톱킹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과정명                         | 교육 대상<br>(정원 기준)              | 총<br>교육인원 | 교육시간 | 주관              |
|-------------------------------|-------------------------------|-----------|------|-----------------|
| 스토킹 대응실무과정                    | 피해자보호팀 168명<br>(스토킹·교제폭력 담당)  | 318명      | 1일   | 시도청<br>교육센터(기초) |
| 스토킹·교제폭력<br>대응심화과정            | 피해자보호팀 168명<br>(스토킹·교제폭력 담당)  | 100명      | 5일   | 경찰인재<br>개발원(심화) |
| 스토킹·교제폭력<br>담당 전문화<br>위탁교육 과정 | 스토킹 담당 중 장기근무자<br>(1년이상) 173명 | 86명       | 5일   | 경찰청             |
| 스토킹·교제폭력<br>대응강사양성과정          | 스토킹대응실무과정<br>동료강사 활동 희망자      | 10명       | 5일   | 경찰인재<br>개발원     |
| 현장실무Ⅲ(여성·청<br>소년)             | 지역경찰 50,410명<br>(순찰팀장, 순찰팀원)  | 2,376명    | 2일   | 시도청<br>교육센터(기초) |
| 현장전문가Ⅲ<br>(여성·청소년)            | 지역경찰 50,410명<br>(순찰팀장, 순찰팀원)  | 171명      | 5일   | 경찰인재<br>개발원     |
| OJT 교육                        | 지역경찰 팀장의 진행으로<br>팀원들과 토론      | 49,991명   | 상시   | 지역관서            |
| 여청수사실무과정                      | 여청수사관 3,892명                  | 3,892명    | 1일   | 시도청<br>교육센터(기초) |
| 신임수사관<br>수사실무과정               | 여청수사에 신규 전입한<br>수사관 대상 교육     | 687명      | 35시간 | 시도청<br>교육센터(기초) |
| 수사지휘과정                        | 여청수사 과장급 교육                   | 40명       | 70시간 | 수사연수원           |
| 경감역량향상과정                      | 여청수사 팀장급 교육                   | 390명      | 35시간 | 수사연수원           |
| 여청수사실무과정                      | 여청수사관 대상<br>실무교육              | 150명      | 70시간 | 수사연수원           |

자료: 경찰청

개정안은 경찰청장이 가정폭력범죄, 스토킹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정기적 교육 실시를 의무화함으로써 경찰관이 피해자의 위험 신호를 조기에 인식하고, 긴급임시조치·분리조치·피해자 통보 등 법적 보호수단을 적시에 이행함으로써 재범과 2차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스톱킹범죄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실시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지 않은 반면, 개정안 제8조의4제2항은 교육의 실시 방법·절차·대상 및 평가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자세한 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다만, 경찰의 직무는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 및 범죄 피해자의 보호이고,<sup>2)</sup>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직무[불심검문(§3), 보호조치 등(§4), 경찰장비의 사용 등(§10)]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의 실시와 관련해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11<sup>3)</sup> 등의 특정 범죄의 처벌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경찰청장이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505, 발의일: 2025년 10월

---

2)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 2의2. 범죄피해자 보호
3. ~ 7. (생략)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11(수사 지원 및 교육)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승인하거나 보고받은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에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을 하고,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 조항 신설일: 2024년 12월 3일)

10일)<sup>4)</sup>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경찰청은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관련 범죄 대응에 더욱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개정안과 같이 전체 경찰관을 대상으로 교육하기보다 대상 범죄들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찰관으로 교육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있고, 법체계상 경찰작용의 일반법인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성격상, 경찰관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근거는 「가정폭력 처벌법」 등 개별법령에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으로 더 적절해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개정안은 경찰청장 외에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도 가정폭력범죄, 스토킹범죄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양경찰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가정폭력범죄를 수사·처리한 건수는 2건<sup>5)</sup>임. 해양경찰청은 현재 스토킹범죄의 수사방법 및 수사 절차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음.

해양경찰청은 「형사소송법」,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경찰청과 동일하게 일반사법경찰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2017년 경찰청과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해양 관련 범죄’를 우선적으로 관할하고 있으며, 개정안에 동의하는 의견임.

---

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505) 제4조의2(가정폭력범죄의 대응 교육) ① 경찰청장은 전(全) 경찰관을 대상으로 강압적 통제, 비신체적 학대 및 성평등 인식제고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가정폭력사건으로는 2024년 여객선에서 이혼한 배우자를 폭행한 사건과 2021년 연안해역에서 배우자를 폭행한 사건이 있음.

문 의 처

02) 6788-5345